

회계의 주차관리계정 세입·세출 규정 중 첫째, 현재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은 전액 시 세입 조치되고 있으나 민간위탁 노상주차장의 경우 제반업무(대상주차장 선정·공고·입찰·계약·사후관리 등)를 구청에서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위탁 수입금을 현행 시 세입에서 제외하여 구 세입으로 조정하고

둘째, 서울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시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차위반 차량 견인료 수입 등 민간견인업체 대행비용을 시 세입 및 세출예산에서 제외하여 자치구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와 자치구간 관할사무와 비용 귀속을 일치시킴으로서, 교통관련 특별회계의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한 본 조례 개정안이 상정된 내용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
감사합니다.

○委員長 柳準向 交通局長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습니다.

○專門委員 金泰鎬 專門委員 檢討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特別市駐車違反車輛牽引等에 관한條例改正條例案에 대해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1. 제안자

○서울특별시장

2. 제안이유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업무를 현재 서울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에서 각 구청으로 이관시켜 견인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주·정차위반 견인을 각 구청장이 함.
- 견인료 수입을 현행 서울특별시 수입에서 견인주체인 각 자치구로 이관시킴.
- 민간견인업체 견인업무 대행비용을 현재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서 지급하던 것을 각 자치구에서 지급토록 함.

4. 검토요지

○현행 서울시 견인업무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량 35대를 구입, 10대는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관시켜 독자적으로 견인업무를 하고 나머지 25대는 각 자치구로 차량과 인원을 파견시켜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하고있는 실정이며 한편, 민간견인업체는 사업등록을 한후 불법주·정차 차량을 견인 보관장소에 보관한 후 견인에 따른 민간대행 수수료를 시에서 받아가고 있는 것으로 이 업무 역시 각 자치구로 이관시키고자 함.

○현행제도는 단속권 즉, 딱지를 떼는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견인업무는 시에서 하다보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단속과 견인업무를 묶어 구청장에게 넘겨주자는 것이 본 조례개정의 목적임.

○문제는 현재 견인업무를 위해 각 자치구로 파견되어 있는 인력이 시설관리공단 소속직원인데 업무가 이관될 경우 자연스럽게 파견된 인력이 자치구 기능직공무원으로 신분전환이 되어야 하고 이에따라 자치구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늘려야 하는데 자치구로서는 작은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시책과 상충되는 정원 늘리기는 상당히 힘든 일이며 그렇다고 현재있는 인원을 줄이기 또한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서울시가 정원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함.

.....
두번째, 서울特別市交通事業特別會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
(報告)

1. 제안자

○서울특별시장

2. 제안이유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업무를 각 자치구

<p>로 이관함에 따라 시 세입으로된 견인료를 각 자치구 세입으로 이관 시키고자 함.</p> <p>3. 주요골자 ○ 피견인 차주가 물게되는 견인료를 서울시 수입으로 하던것을 각 자치구 수입으로 이관함.</p> <p>4. 검토요지 ○ 현행 서울특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5조에는 주차관리계정 세입으로 불법주차에 따른 피견인 차주가 물게되는 과태료, 견인료, 보관료 중 견인료, 보관료를 시 수입으로 하였으나 견인업무를 다루는 서울특별시주차위반차량견인등에 관한조례가 개정되어 견인업무가 각 자치구로 이관될 경우 견인료 역시 각 자치구 수입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함.</p> <p>.....</p> <p>이상 報告를 마치겠습니다.</p> <p>○ 委員長 柳準向 專門委員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條例案에 대한 交通局長의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 改正條例案에 대한 質疑와 答辯이 있었습니다. 質疑와 答辯은 交通局長을 상대로 一問一答式으로 進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金泰雄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p> <p>○ 金泰雄委員 金泰雄委員입니다. 서울시 施設管理公團에서 牽引車輛 25臺를 運營해 왔다고 되어 있는데 이 25臺에서 牽引料, 保管料 등의 年 收入額은 얼마쯤 되고, 그 다음에 一般 民間에 委託 준 駐·停車 年 牽引料, 保管料 이 金額이 어떻게 되는지 交通局長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p> <p>○ 委員長 柳準向 앉아서 答辯하십시오. 委員님들 다 이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p> <p>○ 交通局長 黃哲民 감사합니다. 施設管理公團의 車輛 25臺가 各 區廳에 1臺 내지 2臺씩 가 있습니다. 運轉技士도 派遣나가 있고 車도 派遣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區廳에 나가 있는 車가 주로</p>	<p>하는 일이 民間人이 하는 不法駐停車를 牽引하는 業務보다 뒷골목에 방치된 廢車를 收去해서 處理하는 任務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餘力이 있으면 不法駐·停車도 牽引합니다.</p> <p>그래서 施設管理公團의 牽引料는 94年度 歲入으로 따졌을 때 2億 7,999萬원으로 策定되어 있고, 民間人 業體들이 하는 牽引料는 37億 1,342萬원, 警察에서 牽引했을 때 歲入은 5億 3,076萬원, 그리고 牽引되어 와서 일단 保管所에 保管함으로써 保管手數料 받는 것이 7億 8,968萬원.....</p> <p>○ 金泰雄委員 어디가요?</p> <p>○ 交通局長 黃哲民 6個 保管所의 保管料가 30分當 400원입니다.</p> <p>○ 金泰雄委員 그러면 지금 25臺를 施設管理公團, 소위 서울시에서 運營하는 것이 2億 7,000萬원, 警察에 준 것이 10臺 해서 5億 원, 民間業體는 몇 臺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p> <p>○ 交通局長 黃哲民 民間業體는 124臺고, 警察은 우리가 管理轉換시켜준 10臺를 포함해서 기존에 자기들 스스로 가지고 있던 것하고 합치면 34臺입니다.</p> <p>○ 金泰雄委員 그런데 이 5億원이란 얘기는 34臺에서의 收入입니까?</p> <p>○ 交通局長 黃哲民 들어오는 收入입니다.</p> <p>○ 金泰雄委員 그렇게 보는 거예요?</p> <p>○ 交通局長 黃哲民 그렇습니다.</p> <p>○ 金泰雄委員 그렇다면 그간에 서울시 所有 牽引車輛은 주로 過怠料 等 牽引料를 徵收하는데 目的이 있는 게 아니고 골목에 있는 廢車 끌어가는 게 目的이예요?</p> <p>○ 交通局長 黃哲民 두 가지 業務를 겸하고 있는데, 주로 하고 있는 것이 放置廢車 車輛을 收去해서 處分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 民間人도 牽引業務를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並行하기는 합니다.</p> <p>○ 金泰雄委員 그러면 이것이 區廳으로 移管되었을 때 收入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내내 이런 收入의 收入線이 되는가.....</p>
---	---